

제2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부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부 록 목 차

1.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면
2.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면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3
----------	------

발의연월일 : 2025. 5. 2.

발의자 : 강혜순, 김도운, 홍영진
문희성, 정재환, 문기호
이명녀, 박경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장과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안 제7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대여사업자 책무 삭제
- 나. 이용자 준수사항 개정(안 제6조)
 -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사항 추가
- 다.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7조)
- 라. 무단방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 제32조 ~ 제34조

나. 「도로법」 제74조

다. 「교통안전법」 제3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4. 16. ~ 4. 23.(7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안내문 및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제공
2.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와 보관함 설치·운영
3. 정기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2.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 장비와 보관함 설치·운영
- 3. 정기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 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p><u>제7조</u> (생략)</p>	<p><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p><u>제10조</u> (현행 제7조와 같음)</p>
------------------------	---

근 거 법 규

□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도로법」 [시행 2025.2.14.] [법률 제2029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7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소 속: 교통과
- 직 급: 지방행정서기보
- 성 명: 김성준
- 연락처: (052)290-3964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동킥보드
 - 나. 전동이륜평행차
 -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

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안내문 및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제공
2.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와 보관함 설치·운영
3. 정기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

위 안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